

무 정 액 영 수 증

(앞 면)

← 250 mm →		↓ 5mm															
NO. _____ 무정액영수증원부 <table border="1"><tr><td>금 액</td><td>금 원정(W)</td></tr><tr><td>발 행 연월일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5">기 부 자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/tr><tr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<tr><td>주 소</td><td></td></tr><tr><td>직 업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</table>		금 액	금 원정(W)	발 행 연월일		기 부 자	성 명		생년월일		주 소		직 업		전화번호		NO. _____ 무정액영수증 금 원정(W)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 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 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 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: 주소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90mm
금 액	금 원정(W)																
발 행 연월일																	
기 부 자	성 명																
	생년월일	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
	직 업																
	전화번호																
← 100mm →	← 150mm →	5mm															

(뒷 면)

- 주 1.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 할 수 있습니다.
2. 회계책임자는 금액, 발행연월일, 기부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주소·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3. "취급자인"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.

*이 영수증은 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사업자등록번호 : 138-83-01632)가 제작하고,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.

*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(「정치자금법」 제59조).

*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·발행·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·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.